

의안번호	제 558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2월 1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58
----------	-----

제출연월일 : 2017년 2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조직개편(충북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종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 플라자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플라자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용 허가
-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면제·반환 기준
- 입주기준 및 대부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제9조)
 - 시설 입주 자격, 대부료 납부·반환기준 및 관리비 등 납부
- 준수사항, 제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제14조)
 - 행위제한, 사용 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기준
- 플라자 시설 관리·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필요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운영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에 위치한 시설물의 명칭을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플라자 내의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대강당, 자료실, 다목적실, 식당, 공연장, 야외 부대 공간 등 제반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각종 사업·행사·문화·학술·교류·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입주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제7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라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도 단위 여성 법인·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7조(시설 입주) 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여성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도 내 각 시·군을 총괄하는 도 단위 여성단체
2. 양성평등 연구 및 정책 활동을 하는 도 단위 민관 협의기구
3. 인권, 보건, 복지 등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개별 단체들의 도 단위 협의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설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부료의 납부 및 반환 등) ①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산정

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예정 단체 및 개인이 입주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반환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정산) ① 시설에 입주한 법인 또는 단체는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법인 또는 단체가 퇴거할 때에는 관리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③ 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면적과 인원수 등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조정은 매년 입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사용자 및 입주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1조(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단체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플라자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용도의 사용 및 구조변경을 임의로 하거나, 대부료 및 관리비 등을 3회 연속 연체한 경우

제12조(원상회복) ① 사용자 등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설의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플라자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제13조 위반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 사용자 및 입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자 및 입주자로 본다.

[별표 1]

사 용 료 기 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물명	기 준	금 액	냉·난방비
대 강 당	1회/2시간	50,000	30,000
문화이벤트홀	1회/2시간	40,000	25,000
다목적실	1회/2시간	40,000	25,000
강 의 실	1회/2시간	20,000	20,000
영상미디어실	1회/2시간	20,000	20,000

※ 적용기준

1. 주말, 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 금액의 20% 가산
2. 주간(09:00~18:00), 야간(18:00 이후)
3. 매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

[별표 2]

사 용 료 반 환 기 준(제6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전일	반환하지 않음

[별표 3]

대 부 료 반 환 기 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날	납부한 대부료 전액
입주예정 단체 및 개인이 입주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2개월 이전	납부한 대부료 전액
	사용개시일 2개월 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	납부한 대부료에서 총 대부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사용개시일 15일 전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	납부한 대부료에서 총 대부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담당자	팀 장	여 성 정 책 관	결 재
1. 시 설 명					
2.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3. 사용예정인원	명	4. 사용목적			
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					
주 소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호)		대 표 전 화	
6. 시설사용료					
사 용 료	원	내역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시설 사용 허가증					
1. 신 청 자 : 귀하					
2. 사용일시 :					
사 용 료	원	내역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허가 번호				
사용 (이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구 분	기본시설			
	부대시설장비			
사용(이용) 기간				
사용(이용) 목적				
행사(교육) 내용				
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명 칭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 주요사업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 추진근거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사용 및 대부에 따른 제비용

3. 관련조문

- 안 제4조(시설의 사용 허가)
 - 도지사는 플라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대부료 및 대강당 등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준

나. 추계의 전제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시설 사용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 기준을 토대로 비용 추계

다. 추 계 결 과 :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48백만원 세입 추계

라.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여성정책관 변혜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계
세 입	9,180	9,400	9,600	9,800	10,000	47,980
국 비						
도 비						
기타(사업수입)	9,180	9,400	9,600	9,800	10,000	47,980
세 출	110,000	113,000	116,000	119,000	122,000	580,000
일반운영비	110,000	113,000	116,000	119,000	122,000	5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도 비					
자체 수입	소 계	9,180	9,400	9,600	9,800	47,980
	지방세					
	세외수입	9,180	9,400	9,600	9,800	47,98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련법령 발췌

□ 양성평등 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